

안 산 시 폐 기 물 관 련 과 태 료 부 과 징 수 업 무 에 관 한 조 례 안 수 정 안

의 안 번호	271
-----------	-----

제 안 년 월 일 : '94. 6. 15

제 안 자 : 총무위원회위원장

1. 수 정 이 유

- 안산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어 시행될 경우
- 기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안산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 제12조 규정의 별표3의 2항 가(1)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
- 안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와 혼용될 우려가 있어 폐지되어야 함.

2. 수 정 주 요 골 자

- 동 조례안중 부칙 ③을 추가함.

○ "안산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 제12조의 별표3의 2항 가(1)를 폐지한다.

안산시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

안산시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○ 부칙 ③을 추가한다.

① (시행일) (현행과 같음)

② (경과조치) (현행과 같음)

③ (폐지사항)

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 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 제12조의 별표3의
2, 가(1)을 폐지한다.

조 문 대 비 표

명 행	수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 되었거나 부과 되어야 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.</p> <p>③ (신 설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① (시행일)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경과조치)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폐지사항)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 제12조의(별표3) 2호, 가의(1)을 폐지한다.</p>